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9. 1.
- 제공자 : 농림부 소득관리과
- 과 장 : 임 재 암
- 사무관 : 장 동 욱
- 전 화 : 500-2117

이 자료는 2005년 9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「양곡명예감시원제」 도입

- 농림부는 '05. 9. 2부터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「양곡명예감시원제」를 도입·운영키로 하였다.
 - 운영규모는 2,000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·도, 시·군이 위촉하며,
 - 생산자·소비자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양곡유통에 관심이 있는 인사는 누구나 위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
 - 명예감시원은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, 지도, 홍보뿐만 아니라, 농림부나 지자체의 양곡유통합동단속반에도 편성되며 활동시에는 활동수당이 지급된다.
 - 농림부는 양곡명예감시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양곡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'정부양곡의 용도외 사용', '양곡표시제 이행', '거짓·과대의 표시나 광고행위'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【첨부】 1. 기관별 양곡명예감시원 위촉인원 내역
2. 양곡부정유통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기준

기관별 양곡명예감시원 위촉인원 내역

| 위촉기관 | 인원(명) |
|------------|-------|
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1,000 |
| 서울 | 200 |
| 부산 | 80 |
| 대구 | 50 |
| 인천 | 50 |
| 광주 | 30 |
| 대전 | 30 |
| 울산 | 20 |
| 경기 | 210 |
| 강원 | 30 |
| 충북 | 30 |
| 충남 | 40 |
| 전북 | 40 |
| 전남 | 50 |
| 경북 | 60 |
| 경남 | 70 |
| 제주 | 10 |
| 합계 | 2,000 |

주>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별로 양곡유통업체수, 유통물량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

양곡부정유통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기준

| 구 분 | 포상금 지급기준(건당)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부정유통물량 | 민간인 | 공무원 |
|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·처분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| 2톤 미만 | 20만원 | 10만원 |
| | 2톤 이상 ~ 5톤 미만 | 30만원 | 15만원 |
| | 5톤 이상 ~ 10톤 미만 | 50만원 | 25만원 |
| | 10톤 이상 ~ 20톤 미만 | 70만원 | 35만원 |
| | 20톤 이상 | 100만원 | 50만원 |
|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·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·과대의 표시, 거짓·과대의 광고를 한 자 | 2톤 미만 | 5만원 | - |
| | 2톤 이상 ~ 5톤 미만 | 10만원 | 5만원 |
| | 5톤 이상 ~ 10톤 미만 | 20만원 | 10만원 |
| | 10톤 이상 ~ 20톤 미만 | 30만원 | 15만원 |
| | 20톤 이상 | 50만원 | 25만원 |

주 1)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고 잔여예산액으로 「공무원별 포상금신청액×잔여예산액÷공무원포상금신청총액」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한다.

다만,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「민간인별 포상금신청액×예산액÷민간인 포상금신청총액」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2) 공무원과 합동활동시 양곡명예감시원은 공무원으로 본다.